

사업장 화재·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



- ① 정전기 방지조치 및 인화성·가연성 물질 격리조치,
 ② 화기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, ③ 기계·기구 관련 화재 예방조치 등을 통해
 사업장 **화재·폭발 사고 예방**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화재·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

인화성·가연성물질 화재·폭발 예방조치	☑ 기습·제전장치 및 도전성 재료 사용 등을 통한 정전기 발생 억제·제거
	☑ 인화성 가스·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이 있는 장소에서는 가스농도 측정 및 충분한 환기
	☑ 인화성·가연성 물질 주변 화기 사용 금지 등 점화원 차단·격리
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·폭발 예방조치	☑ 화재위험작업 前 가연성·인화성 물질 제거
	☑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
	☑ 화재위험작업 시 용접방화포 등 불꽃·불티 비산방지조치 실시
기계·기구 관련 화재 예방조치	☑ 기계·기구 사용 前 이상 유무 점검 및 사용 後 전원 차단
	☑ 기계·기구 사용 중 과부하 등으로 인한 과열 및 누유 등 확인
	☑ 배전반 등 전기시설 점검 및 누전차단기·과전류차단장치 설치·관리
화재 대비 비상조치	☑ 화재예방·비상대피 등에 관한 안전교육 및 비상대피훈련 실시
	☑ 비상통로 등 비상대피시설 설치 및 관리
	☑ 화재 대비 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